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 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과세면제) ① 구세의 과세면제대상 은 다음과 같다.</p> <p><u>1. 사업소세</u> <u>마을공동경영사업장</u></p> <p><u>2.-3. (생략)</u></p> <p><u>② (생략)</u></p>	<p>제 2 조(과세면제) ①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p> <p><u>② (현행과 같음)</u></p>